

유럽공동체(EC)의 생축 수입검역규정

국립동물검역소 국제검역과

유럽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1957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화란,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참가하여 EEC 창설조약을 체결한 이래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현재 모두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인구가 3억에 달하며 1992년 완전 통합을 이룬다면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그외에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터키, 모로코의 가입이 거론되고 있고 새로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동유럽까지 가까운 미래에 EC내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EC의 전세계의 시장에서의 위치는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상권을 크게 좌우하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의 변화는 EC가 세계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크므로 날로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 농산물교역과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식량수급 및 수입개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축산물 분야에서도 현재 EC는 1992년 시장 통합을 목표로 동물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규정을 단일화하여 적절한 위생수준의 유지와 동시에 EC연내 동물 및 축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제3국(EC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규제조치를 통일하여 EC회원국내의 동물 및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 및 돼지 등의 생축과 육류에 대하여 EC의 수입허용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경쟁력부족 등으로 수출실적 또한 전

무한 상태이나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위생수준의 재고와 한국 EC간의 검역 및 위생에 관한 교류 강화로 EC내로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EC의 시장규모로 보아 EC는 미국 및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잠재적 수출시장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EC의 공동 농업정책, 수출입구조, 유통구조, 동식물검역제도 등을 자세히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서는 EC의 통합지침 동물 및 축산물에 관한 EC이사회 지침중 1972년의 72/462/EEC의 제3국(EC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생축, 생육 및 육제품의 수입에 따른 검역 및 위생에 관한 규정에서 제3국이 EC내로 생축을 수출하기 위한 선결조건, 수출위생조건, 수출입시의 검역 등 동물의 수입에 따른 검역에 관한 규정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하며 본 내용이 대 EC의 수출 농산물 검역에 참고하고 우리나라 수입자 유화에 대비할 검역제도 및 방법 개선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EC의 수입허용 전제조건

1) 수입허용지역

EC의 제3국으로부터의 동물수입의 승인은 종류별, 용도별(번식용, 비육용 및 도축용)등으로 구분되어 허용되고, 이에 따라 수입후 적용될 동물 검역방법이 결정된다.

제3국이 EC회원국내로 번식용, 비육용 및 도축용 소, 돼지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C에서 지정한 수입허용 대상국가 및 지역의 명단 내에 수록되어야 한다. 이 수입허용 대상지역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선정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① 제3국가내의 가축 및 야생동물의 위생상태 특히 EC의 공중위생 및 동물위생에 위험을 줄 가는성이 있는 외래성 전염병 및 환경위생상태

② 방역관련 규정

③ 수의기구의 조직 및 권한

④ 가축질병 방역조치 및 실시요령

⑤ 동물약품 사용에 관한 규정 특히 동물에의 사용금지 혹은 허가, 공급, 유통 및 관리와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이 고려된다.

선정범위는 제 3 국 국가의 전체가 될수도 있고 국가내의 일부지역으로만 선정될수도 있다. 일단 수입가능대상국 또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허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면 허가 보류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소 및 돼지들은 수출을 위한 선전적 EC에 의하여 수입허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내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체류하여야 한다.

- 번식용 또는 비육용 동물은 6개월

- 도축용 동물은 3개월

- 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동물은 출생이후 계속 동지역에서 체류하였어야 한다.

2) 수입제한 조건

제3국들중 EC역내 비발생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국가, 동질병의 비발생기간이 짧아 EC역내 가축에 감염위험이 있는 국가, 상기 질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국가 등이 수입제한 적용을 받을수 있다.

제한을 받는 가축전염병으로는 우역, 구제역, 우폐역, 부루텅,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텃센병, 전염성 수포성 구내염 등이다.

상기 전염병들은 하기의 비발생기간이 준수되어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 우역, 구제역, 우폐역, 부루텅,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텃센 병의 경우는 1년간 비발생

- 전염성 수포성구내염은 6개월간 비발생

- 상기 질병들에 대하여 이전 12개월동안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3) 검역증명서

동물의 수입시 제출되는 표준검역증명서는 E-

C공동체 요구조건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EC의 규정은 수입상대국에 따라 다양한 특별규정을 포함하도록 검역증명서의 기본양식 작성에 여러 특별규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된 생축의 수입이 거부되며 검역증명서는

① 최종목적지로 수출할 동물의 선적일에 발급되어야 하며,

② 최종목적지인 회원국의 공용어중 최소한 1개 언어 및 EC최초도착 회원국의 공용어중 최소한 1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③ 증명서의 원본은 수출동물에 동반되어야 하며,

④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조건에 부합된 동물임을 증명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⑤ 1건당 1부로 작성되어야 하며,

⑥ 단일 수화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위생조건

수입위생조건은 수입대상국가의 위생상태에 따라서 일반 조건외에 특별조건이 추가되는데 특별조건 내용에 대해 판정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EC본부와 회원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E-C공동체 절차에 따라 특별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EC회원국내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는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여러가지 위생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 생축들은 번식용, 비육용 및 도축용 등으로 분류되어 원산지 농장 위생조건, 제한을 받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건, 수송조건 등에 부과된 여러 위생조건을 만족하여야만 도입이 허용된다.

1) 원산지 농장

동물들은 구제역, 돈수포병, 돼지콜레라, 텃센병, 소부루세라, 돼지부루세라, 탄저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상태의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번식용 또는 비육용 소 및 돼지의 경우 질병 청정지역(epizootic free area)에 위치하며 수출동물이 선적되기전 3개월간 구제역, 부루세라(이상 소과 동물), 부루세라, 돼지콜레라, 텃센병(이상 돼지) 등이 무발생이고 또한 선적전 30일동안 가ata의

모든 법정전염병 무발생인 농장에서 생산된 것 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 농장에서 선적전 30일간 계속 계류되어 졌어야 한다.

2) 원산지 동물군

번식용 또는 비육용의 모든 소의 경우는

- 공인 결핵무발생 우군(officially tuberculosis free bovine herd)에서 생산되고, 6주령 이상의 경우는 선적전 30일 이내에 실시한 피내 튜베르클린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 공인 부루세라 무발생 우군(officially brucellosis free bovine herd)에서 생산되고, 12개월령 이상의 경우는 선적전 30일이내에 실시한 부루세라 혈청응집반응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30 IU/ml 이하),
- 유우의 경우에는 유방염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하며, 우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염증상태 또는 특정 병원미생물이 없어야 하며,
- 이전 3년간 소백혈병(enzootic bovine leukosis)가 발생하지 않은 우군에서 생산되고, 12개월령 이상의 경우에는 선적전 30일 이내에 실시한 소백혈병 혈청학적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번식용 또는 비육용의 돼지는

- 반드시 공인 돼지 콜레라 무발생 농장 (officially swine fever free holding)내의 부루세라 무발생 돈군(brucellosis free swine stock)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또는 돼지 콜레라 무발생 농장(swine fever free holding)내의 부루세라 무발생 돈군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돼지 콜레라에 대해 예방접종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특히 25kg 이상의 돼지는 선적전 30일 이내에 실시한 부루세라 혈청응집검사에서 30IU/ml이하 및 CF test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4개월령 이상의 도축용 소들은

- 공인 결핵 무발생 우군에서 온것이 아닐 경우 선적전 30일 이내에 실시한 피내 튜베르클린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 공인 부루세라 무발생 우군 또는 부루세라 무발생 우군에서 온것이 아닌 경우 선적전 30일 이내에 실시한 혈청응집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한다(30IU/ml 이하).

3. 수입검사

1) 최초 도착지 EC회원국 검사

소 및 돼지가 EC영토에 도착 즉시 동물위생 검사가 실시되는데 검사실시자는 최초 도착 EC 회원국의 정부 수의사이다.

동검사에서는 하기의 사실이 발견되면 검사 회원국은 소 및 돼지의 이동을 금지하게 된다.

① 수입 허용대상 지역이외의 제 3 국에서 수입된 동물

②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이 있는 동물

③ EC지침 “제3국으로부터 생축, 생육 및 육제 품 수입에 관한 검역 및 위생검사에 관한 규정” 인 72/462/EEC와 지침 64/432/EEC의 “EC역내의 생축 교역시 위생문제에 관한 규정”的 모든 해당 규정과 그 부록들의 내용이 수출국에 의하여 준수되지 않은 경우

④ 동반된 검역증명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동 검사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회원국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은 격리 검역하거나, 검역증명서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검역증명서의 내용이 확인될때까지 동물들을 감시하에두고, 이동을 제한시킨 동물을 반송조치하거나 반송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정부기관이 폐기명령을 내리고 도살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수입위생검사(import inspection)후에 소 및 돼지와 수반되는 증명서에는 동 동물의 수입이 허용되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의 여부 내용이 분명히 기재된다. 수입승인을 받은 동물로서 최종 목적지가 EC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검사 후 하역조치 없이 세관 당국의 감시하에 최종 목적지 국가에 직송하게 된다.

최초 도착지 EC회원국 검사에서 통과되어 최종 목적지 EC회원국으로 운송되는 중에 동물들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경유중인 회원국이 해당 동물의 격리 검역을 명하고 검사결과에서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일군의 모든 동물을 도살 및 폐기할 것을 명할것이다.

2) 최종 목적지 EC 회원국 검사

각 최종목적지 국가는 생축이 자국의 국경에 도착하기에 앞서 각 탁송품의 특성, 두수, 도입 예정항구, 도착시간 등을 미리 통지할 것을 송하인에게 요구하며 탁송품이 도착전 48시간 이내에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최초 도착지 EC회원국 검사에서 통과되어 경유 회원국을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 국가에 도착한 동물은 본 동물이 부과된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부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본 검사는 국경에서 곧바로 실시하거나 최종 목적지 회원국 담당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두곳에서 모두 실시하게 된다.

동 검사에서 수입허용지역에서의 수입여부, 원산지 농장조건, 원산지 우군조건, 금지되는 질병의 발생여부, 수송조건, 수반된 검역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도입이 금지된다.

다음에는 본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공인 부루세라 무발생조건, 공인결핵 무발생조건 및 공인 돼지콜레라 무발생조건에 대해 EC가 정한 기준을 소개한다.

I. 결핵 무발생 우군(Tuberculosis-free bovine herd)

하기상태의 우군은 공인 결핵 무발생우군으로 인정된다.

(a) 모든 소가 결핵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b) 6개월령 이상의 모든 소가 1회는 우군의 소독후 6개월후, 2회는 1회 실시후 6개월후, 나머지는 1년 간격으로 하여 2회이상 실시한 공식적 피내 튜버큐린검사에서 음성이었다.

결핵에 대해 공식적 관리를 받는 회원국에서 1년 간격의 2회의 연속적인 결핵검사에서 양성 우군이 1% 미만이면 검사 실시 간격이 2년으로 연장된다.

2년 간격의 2회의 연속적인 검사에서 양성 우군이 0.2% 미만이면 검사 실시 간격이 3년으로 연장된다.

3년 간격의 2회의 연속적인 검사에서 양성 우

군이 0.1% 미만이면 검사실시 간격이 4년으로 연장되고 검사대상 소의 연령도 24개월로 늘어난다.

공인 결핵 무발생 우군의 정기검사에서 결핵 양성반응을 보이는 소가 나타나거나 정기부검에서 결핵의 임상증상이 진단되면 동우군은, 6주령 이상의 모든 소가 2회 이상의 공식적 피내 튜버큐린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는 공인 결핵 무발생 우군으로의 인정이 보류된다. 동검사에서 1회 검사는 양성을 보인 소를 동 우군에서 제거한후 2달 이후에 실시하고 2회 검사는 1회 검사후 24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c) 소가 공인 결핵 무발생임을 보증하거나 또는 6주령 이상의 경우 피내 튜버큐린검사에서 음성임을 보증하는 정부공인수의사가 위생증명서는 어떠한 소도 동 우군내로 도입될 수 없다.

(i) 그러나 결핵 양성우군이 회원국의 전체 우군의 0.2%미만이고, 정부 공인수의사가 작성한 위생증명서가 하기의 조건임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피내 튜버큐린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1. 동물들이 모두 정확하게 확인되었으며,
2. 모두 동 회원국내의 결핵 무발생우군에서 온 것이며,
3. 수송 도중 공인 결핵 무발생우군이 아닌 우군과 접촉하지 않았다.

(ii) 4년이상동안 하기의 조건인 회원국은 상기 (i)항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면제된다.

- 우군의 99.80%이상이 공인 결핵 무발생 우군으로 인정되고,

공인 결핵 무발생우군이 아닌 우군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감독하에 도축목적으로 이동되는 경우에만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II. 부루세라 무발생 돼지 및 부루세라 무발생우군 및 돈군 (Brucellosis-free swine and brucellosis-free bovine herds and swine herds)

A. 우 군

1. 하기조건의 우군은 공인 부루세라 무발생으로 인정된다.

(a) 동 우군내에 부루세라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

은 소가 없다.

(b) 이전 6개월이상 모든 소가 부루세라에 대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c) 12개월령 이상의 모든 소는 ,

(i) 3~6개월 간격의 2회의 공인부루세라 혈청 응집검사에서 30IU/ mL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 1회의 혈청응집검사를 3개월 간격의 3회의 링테스트(Ring test)로 대신하고 마지막 3회째의 링테스트후 6주이후에 2회의 혈청응집 검사를 할 수있다.

- 상기항의 혈청응집검사는 2회의 부루세라 항원검사(Buffered brucellosis antigen test)또는 2회의 미세혈청응집검사(Micro-agglutination test)로 대신할수 있다.

(ii) 3개월이상 간격의 3회의 링테스트 또는 3개월 간격의 2회의 링테스트와 2회째의 링테스트후 6주이후에 실시하는 한번의 혈청학적 검사(Sero-agglutination test, buffered brucellosis antigen test, plasma ring test 또는 macro agglutination test)가 실시되어 부루세라가 발생하지 않음이 해마다 확인되었다. (링테스트 대신 3~6개월 간격의 2회의 혈청학적 검사를 매년마다 실시할수 있다.)

영내의 모든 우군이 부루세라에 대한 공식적인 검사를 받고 1%이하의 우군만이 양성인 회원국에서는 3개월이상 간격의 두번의 링테스트 또는 한번의 혈청학적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집유탱크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검사간격은 반으로, 검사횟수는 2배로 해야 한다.

(iii) 영내의 우군중 99.8%이상이 4년이상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인 회원국에서는 상기(ii)항의 매년의 정기검사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간격이 늘어나 2년으로되며, 단 반드시 혈청학적검사중 하나를 실시하여야 한다.

(d) 공인부루세라 무발생 우군에서 온 것임을 보증하는 정부공인수의사의 증명서 없이는 어떠한 소도 동 우군내로 도입될 수 없으며,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동 우군내로 도입전에 30일 이내에

실시된 부루세라 혈청응집검사에서 30IU/ mL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여야만 도입될 수있다.

그러나,

(i) 영내의 우군중 부루세라 양성 우군이 2년 이상 0.2% 이하이고, 정부 공인수의사가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하기 내용을 보증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혈청응집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1. 동물들이 정확히 확인되었으며,
2. 동 회원국내의 공인부루세라 무발생 우군에서 왔으며,

3. 수송중 공인부루세라 무발생 우군이 아닌 우군과 접촉하지 않았다.

(ii) 4년이상동안 하기의 조건인 회원국은 상기(i)항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면제된다.

- 우군의 99.8%이상이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으로 인정되고,

-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이 아닌 우군은 정부의 공식적 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감독하에 도축 목적으로 이동되는 경우에만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1. 하기조건의 우군 또는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으로 인정된다.

- 197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이상 부루세라 가 발생하지 않는 회원국에 있는 우군

- 상기의 10년 이상동안 상기 1항의 모든 규정을 만족하는 우군

2. 하기 조건의 우군은 부루세라 무발생으로 본다.

(a) 부루세라 예방접종을 받은 숫자가 없으며,

(b) 암소는 전부 또는 일부가,

- 6개월령 이전에 live buck 19 vaccine 또는 EC 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기타 백신으로 예방접종되고,

- 15개월령 이전에 공식적으로 검사받은 killed 45/20 adjuvant vaccine으로 예방접종되었으며,

(c) 우군내의 모든 소들이 상기 1항의 (b), (c)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live 19 vaccine으로 예방접종받은 30개월령 이하의 소는 30IU/ mL ~80IU/ mL 의 검사결과를 보일수 있는데 이때 CF검사에서는

- 이전 12개월 이전에 예방접종 받은 암소는 30

EEC units 이하,

- 그외의 소는 20 EEC units 이하의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d) 동물들이 1 (d)의 조건을 준수함을 보증하거나 브루세라 무발생우군에서 온것임을 보증하는 정부공인수의사가 작성한 위생증명서 없이는 어떠한 소도 동 우군내로 도입될수 없으며 12개월령 이상의 경우 도입전 30일 이내에 실시된 혈청응집검사에서 30IU/ml 이하의 결과를 보여야만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하로써 live buck vaccine으로 예방접종된 소는 30~80IU/ml의 결과를 나타내도 도입이 가능한데 단 이때 CF검사에서

- 이전 12개월 이전에 예방접종된 암소는 30 EEC units,

- 12개월 이내에 예방접종된 소는 20 EEC units를 나타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하기조건의 우군의 3년이후에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우군으로 인정되된다.

(a) 모든 소가 이전 3년간 부루세라에 예방접종되지 않았으며,

(b) 2 (c)항의 조건이 이전 3년간 계속 준수되었으며,

(c) 상기 3년기간의 말기에 12개월령 이상의 소들에 실시한 혈청응집검사와 CF 검사에서 각각 30 IU/ml 이하와 음성을 보였다.

4. 부루세라 무발생우군의 소는 하기조건에 한해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우군으로 도입될 수 있다.

- 도입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16개월령이상이며,

- 부루세라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일년 이전에 받았으며,

- 도입전 30일 이내에 실시한 혈청응집검사에서 30IU/ml이하 그리고 CF검사에서는 음성

상기에 따라 공식적 부루세라 무발생 우군내로 도입하면 그 군은 도입날짜를 기준으로 향후 2년간 부루세라 우군으로 간주된다.

5. 공인부루세라 무발생우군내의 소 일부분이 부루세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의심되는 동물은 즉시 도살하거나 격리시켰으면, 공식적 부루세라 무발생우군이라는 자격은 취소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보류된다.

상기 동 우군내의 12개월령 이상의 모든 동물들에 8주 간격으로 실시된 2회의 혈청응집검사에서 30IU/ml 이하의 결과를 보이면 상기의 잠정적 보류상태는 해제될수 있다.

격리되어있는 소들은 6~8주 간격의 2회의 혈청응집검사에서 30IU/ml이하를 나타내고 C-F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 한해 동 우군내 재도입될 수 있다.

부루세라 무발생 우군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발병 의심이 가면 동 검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 부루세라 무발생우군에 또한 상기의 규정들은 또한 본 규정의 시행전에 5~8개월사이에 예방접종된 동물에도 적용된다.

7. 상기 1~6항의 규정들은 4개월전에 거세된 숫소에는 필요치 않다.

B. 돼지 및 돈군

1. 하기 조건의 돼지는 부루세라 무발생 돼지(Brucellosis-free swine)로 인정된다.

(a) 부루세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않고,

(b) 25kg 이상의 돼지는 동시에 실시한 다음의 검사에서

(i) 혈청응집검사에서는 30IU/ml이하이며,

(ii) 보체응집반응에서는 음성

2. 하기조건의 돈군은 부루세라 무발생으로 인정된다.

(a) 1년이상 그 돈군의 모든 돼지가 부루세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b) 공식적 부루세라 무발생우군과 같은 농장에서 동시에 계류할때

III. 공인 돼지콜레라 무발생 농장, 회원국 또는 지역 및 돼지콜레라 무발생 농장, 회원국 또는 지역 (Officially swine fever free holding, member states or region and swine fever free holding, member states or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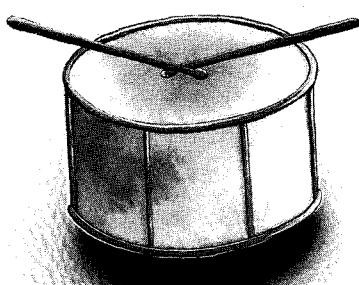
1. 공인 돼지콜레라 무발생 농장은 하기의 농장을 의미

- 이전 12개월 이상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

- 지 않은 농장
-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가 없는 농장
- 최소한 이전 12개월동안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농장
- 또한 농장주위로 반경 2km지역내에 이전 12개월 이상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 2. 공인 돼지콜레라 무발생 회원국 또는 지역은 하기의 회원국 또는 지역을 의미

- 이전 12개월 이상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 이전 12개월 이상동안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
- 그리고 그 회원국의 지역내 또는 농장에는 돼지콜레라에 예방접종 받은 돼지가 없어야 한다.
- 3. 돼지콜레라 무발생 농장, 회원국 또는 지역은 이전 12개월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회원국, 지역 또는 농장을 의미한다.

“Veterinarian Oath”



“인생의 활력을 찾는 수의사”

**장엄한 행진곡
“콰이강의 다리”가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나는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수의사
임으로 안티펜을 차방한다”고……



수의사의 권위와 품위를 존중하는
중식 과학축산
수신자부담 080-023-2361
전화서비스

